

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가단2022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23. 4.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26. 접수 제1379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26. 접수 제13798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채권자로서 D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95156호 양수금 사건에서 'D은 원고에게 16,758,692원 및 그 중 7,462,932원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 3. 7.자 지급명령이 2018. 3. 2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구분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분할협의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G은 2023. 4. 3. 사망하였는데, 망 G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이 있었으므로, 망 G의 사망 당시 D의 상속지분은 1/3였다.

2) D과 피고, 선정자 C은 2023. 4. 3. 망 G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분인 1/6 지분씩을 피고 및 선정자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및 선정자 C이 각 1/2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26. 접수 제1379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및 선정자 C이 각 1/2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26. 접수 제13798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성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0554 판결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피고 및 선정자 C의 명의로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피고 및 선정자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및 선정자 C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수익자인 피고 및 선정자 C은 선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및 선정자 C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 지 목 록

[토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249.6㎡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조, 시멘트벽돌조,

연와세벽, 철근콘크리트조스래이트,

슬라브지붕 2층 주택, 영입소, 지하

지하층 16㎡

1층 134.775㎡

2층 70.56㎡

(· 이상 대전지방법원 동가국)

선 정 자 명 단

1. B

2. C

끝.

